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2010. 6. 30)되어
- 근거법령이 없고 자문기능만 있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4. 검토의견

이번에 폐지하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폐지조례안은 2006년 12월 6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근거하여 제정 조례안을 제출함.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현재까지 조례를 시행하였음.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고, 우리도에서는 관련법령을 근거로 2010년 6월 30일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 조례가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환경분야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녹색성장 위원회가 설치운영 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2010년 1월 13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면서 환경부장관 소속에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됨

이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